##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35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신영대·문금주·전재수

황 희 • 이성윤 • 김성환

민형배 • 박지원 • 유준병

이훈기 • 박희승 • 김윤덕

박정현 · 임오경 · 강선우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국민총생산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2001년 이후 현재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데 비해예금자 보호한도는 5천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어 보호한도를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로 2020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3,760만 원, 6월 말 기준 부보예금액은 2,419조 원으로 2001년에 대비 각각 세배에서 다섯배 가까이 늘어난 바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보험금의 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 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은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업종별로 보험 금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법률 제 호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생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u>보험금은 1인</u>	② <u>보호되는 예</u>
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	금 등의 규모는 최소 1억 원
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	생산 규모 등 경제환경의 변화
도로 한다. <단서 신설>	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u>수 있다.</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